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71 발의연월일: 2024. 11. 26.

발 의 자: 박성준·노종면·허종식

정성호 · 김성회 · 박홍배

문진석 · 윤종군 · 민병덕

박희승 · 염태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탑승자의 허리만을 조여주는 2점식 안전띠가 탑승자의 어깨와 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3점식 안전띠보다 교통사고시 어린이 및 영유아의 보호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고있음에도 전체 어린이통학버스의 70%이상이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3점식 안전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

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수 있으며, 어깨·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53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2항 본문 중 "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"를 "조절될 수 있으며, 어깨·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안전띠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어린이통학버스에 안전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 는 날까지 어린이통학버스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띠를 갖추 어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53조(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제53조(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) ① (생 및 운영자 등의 의무) ① (현 략) 행과 같음)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 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 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(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 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. 절될 수 있으며, 어깨ㆍ허리 및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,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안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 전띠-----다)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 여야 하며,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 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. 다만,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 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

③ ~ ⑦ (생 략)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